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공청회 자료집

【시】 : 98년 10월 15일

【장소】 : 제2학관 소극장

§ 주최: 6대 고대 여학생 위원회 / 학칙제정 운동 기획단

§ 후원: 안암여학생연대회의 / 31대 민족고대 통학생회

/12대 대학원 통학생회

차례

1. 여위 인사글... 1

2. 학생회 단위 연대의 글(원홍)... 2

3.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3

4. 학칙 가안... 9

5. 학칙가안에 대한 설명... 13

6. 학칙가안의 원칙... 18

7. 학칙제정운동에 있어서의 방향성-여위... 22

홍화... 27

8. 성폭력 박람회-성폭력의 사례들... 31

9. 학교별 운동 상황... 40

학내 성폭력 근절과 성적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간을 선포하며

지금의 시기는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0순위, 여성실업 대책의 천무, 가정폭력의 급격증가,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등의 사실들이 이를 뚜렷히 증명합니다.

물론 현 시기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억압의 기제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기에, 우리가 여기서 여성의 문제를 특화시켜내는 것은 여성만이 억압당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성에게는 언제나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2중의 짐이 전가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러한 억압의 현실상들은 사회적으로 은폐되어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학내 성폭력근절과 성적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간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대학을 진보의 공간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과에서, 술자리에서 접하는 성폭력과 성차별들이 그 이유를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노를 모아 성폭력 대학을 비난했으면 합니다.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은 사회가 강요하는 비가시적 압력 때문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분노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기에, 오늘 우리의 분노에 설령 감정의 덩어리가 섞여 있다해도 이를 마음껏 발산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들을 단순히 분노로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대학 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확보할 능동적인 변혁의 힘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과 자치규약을 이야기 합니다.

능동적인 변혁의 힘의 중심적인 배출구로서 학칙/자치규약 제정운동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주간이 안암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적인 흐름들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98년 10월 12일, 6대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양진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여성의 대상화와 여성에 대한 언어 폭력은 고대생이라는 집단 의식에 묻히고 만다. 고대니까 괜찮아라는 의식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시킨다. 1996년 이대 대동제에서 벌어진 추태는 고대생의 이러한 무감증에서 비롯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여학생위원회의 행사는 대학내에 존재하는 성담론의 변화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권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국내 제1호 성희롱사건'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상기해보자. 이 사건의 장소는 어느 곳이 아닌 바로 대학내의 연구실이었으며, 교수와 조교라는 권력관계하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가 대학원내에서 형성되는 권력관계와 맞물려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드디어 물위로 떠오른 것이었다. 대학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의 경우, 보다 강력한 억압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대학에서는 이미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이 제정된 선례가 있다.

이와같이 대학에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을 제정하는 움직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타당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차피 제도화된 학칙이라는 것은 커다란 그물코를 가진 성긴 그물과 같은 것이므로 학칙제정을 위한 움직임과 함께 학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새로운 담론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관심으로 대학내, 아니 이 사회의 성담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간 무수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여성을 위협할 것이다. 제도화된 학칙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런 면에서 담론의 공론화와 제도적 장치에 의한 규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의 공론화의 기제로 학칙이라는 강제 규정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행사의 성과가 성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연대가 통일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만큼 타자의 그것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관계의 장은 대학의 구성원들간의 대화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담론의 구성을 위한 연대의 장을 노정할 것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해체하고, 발언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힘들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12대 고려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발제 : 법대 하늘의 절반

1. 성폭력의 개념 규정

성폭력에 관한 담론화된 모습들을 보면 성폭력은 일반화된 것처럼 단순히 개인적,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며 남녀 불평등의 사회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임을 동의하게 된다. 성폭력에 대한 범위 설정 문제 역시 성기 삽입여부만을 중심으로 하는 강간만이 성폭력이 아니며 다양한 범주와 유형의 성을 매개로 하는 억압 모두가 성폭력으로 포함되는 것임을 합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념 규정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상의 성폭력의 개념과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관련한 피해자 중심의 사고는 매우 정형화되어 협소한 상태이며 아직도 정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기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구성되어 있어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법제상의 개념

우리 나라의 법제상의 성폭력의 개념을 우선 살펴보면 개념의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매우 협소하다. 그 주요한 특징을 보면,

첫째, 성폭력 자체를 각각 분리된 개념으로 본다. 강간, 강제 추행, 인신매매, 음란물의 제조 판매, 성희롱, 음란 행위 등의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성폭력이라는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각각을 서로 분리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성기 삽입여부를 중심으로 성행위를 판단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양분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사회의 성기 중심적, 사물화의 신체적, 생리적인 측면으로만 성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징은 성폭력과 관련된 강간과 강제 추행, 성희롱과 관련된 형법의 규정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만 한정되어 보호법익 역시 여성의 정조로 국한 하고 있으며 강간의 판단기준 역시 피해자의 저항 유무에 따르며 또한 친고죄라는 법제를 도입하여 남성 중심적인 시각의 법률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 기존의 잘못된 인식

기존 여성의 몸은 가문의 대를 잇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새세대를 탄생시킬 생산수단인 공적자산으로 취급받아 왔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인격과 정체성이 구현된다는 관점에서 포착하기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이나 가문의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만 보는 관념과 관련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남성지배 권력과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기반으로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으로의 성이 강조되고 혈통의 순수성이 중요하게 되어 여성의 순결과 정절은 절대적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을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과 동의어로 인식하게 되면서 성을 사회구조와는 분리된 생물학적 영역으로 축소시켜 성의 복합성을 약화시켰다. 결국 여성을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개별 시민으로서가 아닌 지켜야 할 정조를 가진 대상으로 보는 오류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들의 담론 속에서 여성의 몸은 정조와 재생산의 기능을 떠나서는 존재하기 힘들며 여성의 몸이 여성 자신의 것이며 그녀의 삶과 정체성의 터전이라는 관념이 자리잡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정조가 아니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다.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성폭력에 대한 해석이 남성 소유물인 여성에 대한 침해로 임혀지고 있는 현실에서 통제와 억압의 논리로 구성되어진 남성 중심적 담론은 변화는 절실한 것이다.

성폭력이란 결국 타자의 몸에 대한 동의 없는 침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자율권(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여성의 여성권 확보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권리와 성적 자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이다.

▶ 판단 기준으로서의 피해자의 주관·여성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동의의 문제

여성의 경험으로 볼 때 성폭력은 '동의 아니면 성폭력'의 양자택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남녀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성에 기반한 관계는 불평등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가부장제 사회의 일상적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남성과 여성의 성이 성별 위계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폭력에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통상적이며 동의라는 외견상 동일한 형식을 가진 관계에서도 성폭력은 존재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저항 여부가 판별기준이 되는 법제상의 문제 역시 개정이 시급하나 동의라는 단어 역시 간과하기 힘든 사실이 있다. 즉, 남녀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동의는 자율적으로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경험은 결국 자율적 선택, 압력, 강제 그리고 힘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은 결국 성폭력을 두 개의 대립된 틀이 아닌 경험의 연속선상에 바림직한 그리고 바림직하지 않는 면으

로 보도록 제시하여 준다. 이러한 틀은,

①동의적 성 (쌍방이 모두 똑같이 원하는 경우)

②이타적 성 (여성이 거절할 경우 남성에게 미안하게 느끼거나 죄스럽게 느끼기에 하는 경우)

③순응적 성 (안 함으로써 오는 결과가 함으로써 오는 결과보다 나빠서 하는 경우)

④강간

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으로 개념화해야 하며 여기서의 동의적 성과 강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 없이 압력, 위협, 강제, 힘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따라서 동의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개념 하에서 지적되어야 하며 진정한 동의는 오직 자발적 동의만을 일컬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타적 동의와 순응적 동의의 경우 외견상 자발적 동의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동의로 간주되어 질 수 없으며 성폭력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동의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남녀간의 권력 불균형적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동의의 뜻으로 사용하려면 외견상 동의가 아니 자발적 동의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주관

성폭력의 판단 지점의 중심에는 언제나 피해자가 서야 한다. 동의라는 외견상의 모습도 자발적 인지 이타적이었는지 혹은 순응적 상황의 동의였는지 역시 피해자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폭력과 같이 상황판단이 어려운 지점에서 그러한 상황을 불쾌하게 여기고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피해자의 경험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피해자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관에 가지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미를 상쇄할 필요성은 느낀다. 앞에서 여남 권력 불평등의 사회에서 객관이라는 단어가 여성 배제적인 또 다른 형태의 주관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지식체계나 언어체계를 넘어 피해자의 주관성이 여성의 독특한 경험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든 상황의 전반에서 가장 중심에 있던 피해자만이 사건의 총체적 고찰이 가능하며 여기서의 주관성은 다른 측면의 가장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법정에서는 이러한 주관성의 개념의 보충을 위해 합리적 인간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합리적 인간이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이 남성 중심적일 가능성이 많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특수자의 관점을 보편화하여 모든 상황에 기준으로 삼는 전체구도의 전환으로의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의 피해자의 관점 역시 성폭력 피해자 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닌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파악하는 것을 말하기에 주관적이라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이었는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그가 느낄 감정의 문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 개념의 확장

성폭력의 폭력성

성폭력은 초기 논의는 명시적인 폭력과 힘의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논의의 한 측면은 성폭력이 성범죄가 아니라 폭력적 공격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성폭력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는 사회적 통제 기제로 분석되며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하나의 성적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을 통한 남성의 권력 행사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며 이러한 의식적인 겁주기는 결국 여성의 사회참여를 방해하고 남성의 지배에 도전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의 개념은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정치화하는데는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개념은 명시적인 폭력이 사용된 경우에만 성폭력으로 인정하게 되며 여성의 저항 필요, 피해자의 유발 논리 등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통념은 그대로 유지되는 점에서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을 단순히 폭력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으며 보다 일상적으로 여성이 갖는 억압과 배제의 경험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을 폭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많은 여성이 경험하는 학대의 경험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요된 성 및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 학대임을 알고, 성폭력으로의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습의 극명한 예가 고대생의 이대 난동사건에서 규명할 수 있다. 지난 96년도까지 12년간 이화여대 대동계 사건에서 고대생들은 행사를 방해하고 집단 폭력을 가하였다. 그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남자들의 객기나 놀이가 아니라는 것은 대동의 자리인 이화광장에 침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행위가 유독 여대에서만 관습적으로 자행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고대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은 결국 성권력과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의 권력이 함께 작용하며 불평등, 남성지배, 위협, 강제 등의 성의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에서의 성

성폭력은 결국 권력에 기반한 원하지 않는 행위의 부과를 염두에 두고 성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성에 기반한 권력의 문제임을 염두에 둘 때 성별(gender)에 기반한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 성적인 행위란 단지 응시하는 행위에서부터 강간까지의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시각적 (불쾌한 응시나 음란한 시선, 성적인 제스처 등), 언어적 (외설적 언급, 압시, 농담 등), 육체적 (건드리기, 접촉, 예루, 포옹, 추행, 강간 등), 음란물의 전시나 낙서, 성적 봉사의 요구 (과도한 서비스나 예교의 요구, 술자리에서의 서비스 요구 등)를 말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기반한 행위로 성별로 그 사람을 비하하는 행위, 성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혹은 위협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성 차별적인 발언, 여성 비하적인 발언, 고정 관념적인 성별 분담의 강요도 모두 성에 기반한 성폭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행위와 성별에 기반한 행위는 서로 단절된 각기 다른 경험이 아니며 많은 부분 그 구분 지점이 모호하다. 특히 우리가 판단기준으로 잡는 피해자의 경험에 있어서 성적인 행위와 성별에 기반한 행위는 모두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경험이며 그것이 성폭력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모두 성폭력으로 위치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유형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이러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실제 발생 빈도수를 제외하고서라도 85%의 여학생이 대학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의 성폭력은 일반 사회의 성폭력과는 또 다른 유형을 가지며 심각성을 견지하고 있기에 개별화 시켜 바라볼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대학 내 성폭력의 특수성과 심각성

대학 내의 성폭력 역시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대학 공동체의 집단적 성문화에 기초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교수 사건과 같은 교수와 학생간의 신체적 접촉이 허용되고 강의 시간과 사적 자리에서 성차별 적인 말을 하며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상대의 공간을 짓밟을 수 있는 모습들이 이러한 대학 문화의 모습이며 여기에서 집단 자체의 성문화에 대한 특수성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 내의 성폭력은 성적 자율권의 침해와 더불어 학습권과 생활권의 침해라는 점을 지적해 낼 수 있다. 교수와 학생간에는 성폭력을 받아들이느냐 마냐에 따라 피해자는 알게 모르게 학점이나 학위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뿐 아니라 이런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학업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 그리하여 개인 생활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의 조성을 통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 외는 정신적 후유증과 육체적 후유증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감 수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수와 제자간의 성폭력은 교수라는 절대적 권력을 고려한다면 학생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문제를 드러내어 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피해자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학내 성폭력은 많은 부분 담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담론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해결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전반적인 상황인 것이다. 공론화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성폭력 사건이 과망신, 동아리 망신이나 학교 음해 이론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위에서 담론화하는 것을 꺼리는 데다 피해자 자신도 주위의 시선과 가해자에 대한 미안함등으로 피해사실을 감추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유형과 실태

유형을 살펴보면,

① 교수와 학생사이

첫째,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결정 등을 미끼로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

둘째,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여러 가지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받고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셋째,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사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넷째, 강의중 성적 모멸감이나 위축감을 주는 발언 혹은 성별에 기반하여 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진다.

② 학생과 학생간

첫째, 공공모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에서부터 술을 따르게 한다든지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등 MT에서의 강간까지의 경우

둘째,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순환 버스, 화장실, 도서관등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노출, 음란 전화, 팩스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음란물의 게재 등의 경우

셋째, 개인적인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행위나 연인사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성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하는 경우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형태의 성폭력 외에도 교수간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간 사이에서의 성폭력도 잘못된 성문화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은 뒤폴이 장소(39%), MT or 야유회(19%), 과방이나 동아리방 혹은 학생회실(15%), 도서관(6%), 식당과 한적한 곳(4%), 하숙방이나 복도(3%), 강의실(2%)등 대학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학 내에서 그 어느 곳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가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학구성원에 의한 모든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통한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여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일
2.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3.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전을 빌미로 간음, 강제추행, 또는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4.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5.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6.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는 것
7.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
8.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 개인의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는, 또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학업, 근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혹은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공격적인 언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인의 작업에 대한 불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

제 3 조 (의무)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대학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외부강사, 외인교수, 기타 촉탁직 포함)과 학생 (교환학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 5 조 (피해자 보호)

제 1 항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2 항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을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2 장 징계

제 6 조 특별위원회

제 1 항 구성

대학은 성폭력 관련사건의 가해자의 징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2. 본교 교수, 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및 학생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학생 위원은 3인이상으로 하되, 안암 여학생 연대회의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5. 위원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성폭력 상담실의 상근조교로 한다.
6.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총장이 정하는 임시위원으로 대체한다.

제 2 항 (임무)

1.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2. 가해자의 징계회부 및 교육
3. 피해자 치료와 보상의 확보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6. 사건 징계 과정상에서와 가해자 처벌 이후의 피해자 보호의 연대 책임의 의무
7. 성폭력 관련 제반 대책의 수립 및 개선 방향 정립

제 3 항 회의

1.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상담소에 서 조사후 위원장에게 보고가 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전체적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성폭력 상담실에 보관하여야한다.

제 7 조 (신고와 신고인의 보호)

제 1 항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 당사자나 본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 또는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제 3 자)이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점들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제 2 항

신고 접수는 여학생위원회, 성폭력 상담실, 위원회 위원, 그 밖의 학생대표 기구, 지도 교수, 학과 학부장, 대학장, 대학 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등에 신고한다. 이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성폭력 상담실에 접수되어야한다.

제 8 조 (증인의 보호)

증인은 제 5 조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증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자는 특별위원회가 정하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 9 조 (징계내용)

1.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①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을 받는다.
 - ②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를 한다.
 - ③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여 대지보, 언론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러한 실명 사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경우 등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실명 사과가 될 수도 있다.
 - ④ 금전적 피해 배상을 한다.
 - ⑤ 학생 : 퇴학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교수, 교직원 : 해임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 외부인 : 징계위원회는 가해자가 속한 구성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징계를 요구한다.
- ⑥ 경고장 발송 : 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는 징계수위를 높인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 ① 보복, 부인, 불이행시
 - ② 재범일 경우

제 10 조 (동조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제 9 조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적용시한)

적용시한은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본 규칙의 대상에 포함될 시에는 시한제한 없이 적용된다.

제 12 조 (통보)

특별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중간, 최종처리결과를 서면통보한다.

제 13 조 (광고)

특별위원회는 제 9 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대학내 언론 매체를 통하여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한다.

제 3 장 성폭력 상담실

제 14 조 (상담실의 설치)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지역사회의 해당 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5 조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

제 1 항 (위상)

1. 성폭력 상담실은 학교내의 어느 기구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2.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교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하고 그 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제 2 항 (업무)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로 인도
3.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요구
4.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새내기 배움터에서의 교육, 정규 성교육 강좌와 특별 강연 교육 개최 및 각종 포스터와 소책자 발간 등)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가안에 대하여

대학 사회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가안) 해설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는 대학내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예방과 처벌, 즉 그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 끝에 우선 관련 학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서울대학교 여성모임연대가 1993년 '신교수 사건'을 계기로 내었던 2차 성폭력 학칙 가안을 텍스트로 삼아 새로운 학칙 제정 작업에 들어가 그 결과의 중간본이 현재 자문 중이다.

<안암 여성 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에서는 학칙 제정에 있어 각 개념을 객관적으로 뚜렷이 정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암내의 성폭력 사건을 다른 경험에서 비롯한 학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칙 가안을 제정하였다. 그 적용에 있어서 <연대회의>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오해들을 극복하고 그를 척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매우 섬세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 적용 과정에 있어 본 목적에 맞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1. 목적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궁극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들로 인한 폭력을 근절하여 대학 사회가 각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이 적용됨에 있어 평등한 환경으로 지향되기 위함이다. 현재 대학 문화는 학내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중심적 가치 규범 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 사회의 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 근로 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근절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그에 대해 규정, 규제, 해결, 예방하기 위한 구체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학칙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지향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 사회의 성문화를 진단하고 가장 정당한 관점과 방식

을 채택하여 합의하며 운동에 있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학칙이 그 방안으로 채택되어 검토 중이다.

2.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정의

환경형 성폭력의 개념을 부분 차용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근거 상황들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일,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전을 빌미로 간음, 강제추행, 또는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음란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는 것,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 개인의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는, 또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학업, 근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혹은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공격적인 언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인의 직업에 대한 불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비의도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껏 묵살되어 왔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성폭력이다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써 유효하다는 원칙을 제시함이다.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이었는지 악의가 있었는지는 위해를 가한 이의 입장이 아닌 피해를 받은 이의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성은 남녀에게 다른 형태와 다른 의미로 구성되고 적용됨을 인정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상황과 그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학칙은 대학 구성원들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자치로서 실천하는 대학 문화 건설의 한 걸음인 것이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나씩 열거해 놓은 것은 사례를 제한하기 위한 열거가 아닌, 가장 빈번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계도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의 7번과 같은 일반 규정을 통해 다른 경우들을 포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대상

학칙의 적용 대상은 학교 구성원이므로 본 학칙 역시 소정의 기준으로 인정된 실질적 역할의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수는 외부 교수 이상을 학생은 본교 재학생을, 교직원은 기성회직 이상을 포함하며, 외인 교수 및 교환 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건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의 변

화는 그 징계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조항의 적용시 기준 시기는 사건 발생 시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이에 포함될 경우에는 본 학칙의 사건 후 관련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는데 흔히 여겨지듯 가해자 처벌만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 노력에 있어서의 대학내 기구의 연대 책임, 전 과정에 있어서의 각종 교육 등이 본 학칙에 의하여 담보될 것이다.

4.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 (가칭)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징계 위원회)는 신고된 학내 성폭력 사건의 효과적인 해결을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총체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 처리를 맡고 가해자 징계회 부 및 교육, 피해자 보상과 그 치료 등에 대한 의무에의 책임을 지고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도 책임진다.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건 징계 과정상에서와 가해자 처벌 이후의 피해자 보호의 연대 책임의 의무가 있다.

5. 피해자 보호

다른 범주의 폭력과 다르게, 성폭력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전가되거나 여러 단계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슷한 구조와 비등한 고통의 또다른 폭력이 가해지게 된다. 이는 사건 후 특히 극심한 심신의 고통과 공포, 절망 등을 경험하는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배려되어야 하는 당연한 처우와 몫시도 거리가 먼 현실의 한 단면이다. 궁극적으로는 법을 다루는 각계의 직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겠으나, 피해자를 직접 대하는 사람들부터 우선 명심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이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성폭력의 동기 중 많은 부분이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가부장제 사회의 현재에서,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또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건 징계 과정은 물론 사건의 종결이라고 흔히 생각되어지는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6. 신고인과 신고인, 증인의 보호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 당사자나 본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 또는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 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친고죄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함에 따라 무리가 없을 부분이다. 물론 신고인과 증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점들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7. 신고와 신고 기구

사건의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 방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신고 접수는 여학생위원회, 성폭력 상담실(가칭), 특별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학생대표 기구, 지도 교수, 학과 학부장, 대학장, 대학 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등에 신고의 의지를 갖고 접수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폭력 상담실(가칭)에 접수 되어야 한다.

8. 징계 내용

일차적으로,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으로는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 기간 봉사,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여 대지보, 언론 등을 통해 공개 사과, 금전적 피해 배상, 기존의 학칙상 처벌들(학생일 경우 제적, 무기정학, 유기 정학, 근신, 퇴학 등, 교수나 교직원일 경우 해임, 직위 해제, 정직, 감봉 등 외부인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가해자가 속한 구성 단체와 접촉을 통한 징계 요구 등), 경고장 발송(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높인다)등이 있다. 만일 보복을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된 명백한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징계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특히 재범일 경우에는 가장 처벌한다.

9. 부당히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 혹은 기관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앙갚음, 보복에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10. 적용 시한

기존의 형법에서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단계에서 시한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달고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예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규정이 없다고 명시하는 등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러한 규정 자체가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한 자세의 대사회적 모범으로서 의의가 있다.

11. 통보와 공고의 의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는 사건진행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는 중간, 최종처리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제 9 조에 의한 징계 결과를 대학내 언론 매체를 통하여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2. 성폭력 상담실 설치, 위상 및 업무

학교가 학교내에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 전문가 또는 지역 사회의 해당 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 임명하도록 한다. 성폭력 상담실은 학교내의 어느 기구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학교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업무는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로 인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맡는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에서의 원칙

발제 : 안암여자대학총장의회.

성폭력은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공동체 내의 왜곡된 성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이런 성폭력 사건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해 다른 점이 있다. 우선은 왜곡된 성문화에 의해서 발생했기에 성폭력을 가한 사람 역시 사회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신도 피해자라는 논리로 자신이 행한 일을 정당화 시킬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과 성폭력도 엄연한 하나의 폭력이고 그런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는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에게 비난이 가해진다는 사실이다.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라며 추궁하지만 그것은 남성이 조건 반사를 한다는 것을 말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다른 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을 하였는가 등이 기준이 되는 현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현실은 지양되어야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사건을 결말짓는 것,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성폭력 범죄의 딜레마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하나로 성폭력 학칙 제정을 하려는 것이고 이에 있어서 학칙의 단순한 처벌체계 이상의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원칙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성폭력의 개념에서의 원칙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어떤 행동 이상은 성폭력이고 그 정도가 아닌 것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라고 구분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또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결 방식인 얼마나 여성이 저항을 했는가라는 기준으로 성폭력인

가 아닌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성폭력을 성에 기반한 모든 폭력행위라고 정의했을 때 단순히 성적인 행위(Sex)로 인한 것만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고 성성(Sexuality)과 성별(Gender)에 의한 피해는 간과하게 된다. 그렇다고 성성이나 성별상의 차별까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수 없다. 성폭력은 상당히 특수한 범죄이기에 그 상황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그 사건을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건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이 되어야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경험은 그 사건에 국한된 특정인 한 사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 경험의 연속상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고했을 때 기존의 사건 해결과정과는 달리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제정과 적용에서의 원칙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견지해야 한다.

보통 대학은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생각된다. 지성인이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그런 통념과는 달리 대학내에서도 성폭력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학 구성원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특수하다고 하는 사회성이라는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성폭력을 저지른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껏 길러져온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남성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대학 역시 남성중심적인 사회이며 대학 공동체 내의 성문화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성폭력 사건은 대학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서 사회성을 견지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성폭력 학칙 제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적용함에 있어서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단순히 보복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내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성문화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담보해 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에 관한 것 뿐만아니라 그런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게 되고 나아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은 잘못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학칙 내에서 충분히 공동체 내의 구성원에 대한 사과를 담아내며 그리고 공동체의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한다.

▶성폭력 학칙은 피해자의 의사표현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한다.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

-발제: 여학생위원회

0.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은 여학생운동단위의 임무로서만 맡겨져 있었다. 마치 성폭력 사건처럼 복잡한 문제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식으로 학교 당국과 학생회측은 도망다니기에 여념이 없었다. 현실에서 학교측을 설득하는 데는 도덕적 의무외에는 근거가 없었으며, 학생회측의 대응은 일회적,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운동단위의 정체성은 오직 성폭력 해결임무에 있는 것처럼, 성폭력 사건을 여학운단위가 전담하게 되었다. 여학생운동단위는 과도한 역량을 투입에 비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논의는 처음부터 시작하고 대응은 주먹구구식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학운단위들의 일괄적 고민들은 96년 '이대대동제에서의 고대생난동'을 계기로 학내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인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의 고민을 계기로 진척되기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학내성폭력의 대안으로서 학칙을 생각해 내었고, 이후 자치규약으로서 까지 문제의식이 확장되었다.

현재는 부산대, 동아대등에서 학칙이 제정되었으며, 시립대/성균관대의 경우 학교당국과 가안에 대한 검토과정중에 있다. 그러나, 위의 학교는 학교측과의 투쟁을 위한 대중적 작업들이 미약하였고, 관심있는 학교측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실물적 검토작업은 전무하므로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하겠다. 서울대의 경우는 자치규약제정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얼마전, 한 남학우의 퇴출사건 이후 학교측과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중이다.

이러한 현실적 기반하에서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과 방법상의 문제를 고민해보자.

1. 여성운동으로서의 학칙제정운동.

--실질적으로 학내에서 여성문제가 대중운동으로서 활성화되었던 적은 없었다. 인지하다시피 몇 년전까지도 학생운동과의 정체성을 구별해내지 못한 여학생운동단위는 학생운동단위의 내용을 전제로서 받아들이는 하에서만 인정됨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학생운동은 다분히 한계적일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시기는 여학생운동단위의 독자적 흐름을 모색하는 시기이며, 그 시발적으로서의 이슈는 성에 대한 담론이며,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담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왜 하필 성폭력에 대한 담론화의 과정인가?

여성운동은 그간 사적인 공간에 갇혀 억압의 양상이 비가시적이었던 여성의 삶을 정치화시켜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의 가족체계를 기반으로한 재생산의 영역이 사적영역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성의 부분은 바로 그 사적영역의 재생산을 위해 가부장적 권력집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던 부분인 것이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는 잠정적 피해자집단인 여성집단에게는 여성들간의 최대의 공통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성에게는 동의적 인식이 최소화되는 부분이다. 여성노동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타 운동진영과 최소한의 동의적 인식지반이 존재하지만, 성폭력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인식지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급히 일반화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폭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독자적 영역구축에 가장 타당한 소재일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언어를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과정이다.

그간의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과 성폭력 사건해결의 과정은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전제로한 채 철저히 남성의 시각에서 재단되어 왔다. 법제적으로 성폭력은 사회적 소유물로서 '부녀'에 대한 폭력에 한정되고, 파편화된 유형들의 나열일 뿐인 것이다. 그 안에서 여성의 피해를 담아내고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불가능하였고, 오히려 성폭력 판단의 근거로서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중심이 되므로 인해 2중의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이었다.

여성의 시각에서 성폭력을 바라볼 때, 성폭력은 피해자의 저항의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여부로서 판단되어야 하며, 파편화되고 편협한 성폭력의 개념을 넘어 개념자체의 확산이 요구된다.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 성폭력 해결의 과정은 여성의 정조보호의 과정이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확보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때만이 전통적 보수세력과의 차별성이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철저히 여성의 관점에서 개념규정되고,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인 해결 또한 한번의 시각교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사회적 여성의 시각에서 기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학내의 대안적 자치질서구축을 위한 학칙제정운동.

우선, 자치운동으로서의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며, 오해의 지점들을 풀고넘어 가야 하겠다. 학칙제정운동은 학교와의 비타협적 투쟁을 통한 법제의 제정의 과정만이 아닌 학우공동체내에서의 자치규약 제정운동까지를 포괄한다. 이는 우리의 방점이 성폭력 사건해결의 효율성에 찍힌 것이라기 보다는 학내 성폭력 담론의 활성화와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적 해결에 찍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은 학내의 3구성원인 학생-교수-교직원의 자율적 합의의 과정이어야 한다.

실지로 대학에 입학해서 자신의 학교의 학칙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고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까지 대학의 한 구성원인 학생에게 있어 학칙이란 학교당국의 일방적의사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집단이 배제된 채 일방적인 정계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은 학칙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이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학칙내용의 화석화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수-교직원-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이라는 공동체 집단이 실지로는 학교당국의 일방적

인 권력의 행사로 인한 소통의 단절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칙제정운동은 3주체의 동등한 권리선언을 위한 학내민주주의 정착의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측과의 논의에서 자발적인 적극성과 합리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대학사회의 권위적인 학교당국과의 투쟁의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당국과의 투쟁을 통한 학칙제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째, 교육투쟁의 성격을 지닌 학칙 제정운동의 목적이다. 학내성폭력 사건이 다른 사회의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은 피해자 구성원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에 대한 침해가 병행된다는 것이다. 교육권의 부분에 있어 학교측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둘째로는 교수-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의 해결에 있어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서울대 신교수 사건이후로 대학사회에 묻혀져 왔던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그 공론화의 속도가 가히 놀랄만한 것으로 보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학교당국의 반응은 교수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였고 학교 명예 실추의 문제로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는 학교, 정부의 배상의 책임을 무시한 채 개인적인 배상으로서 끝을 맺은 신교수사건의 판결문의 한계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세력들이 우려하다시피 학칙을 통한 학교당국과의 투쟁은 역락소모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적인 고민이 학교당국과의 투쟁일 수는 없을 것이며, 대중 동원에 의해 단기간적 투쟁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치규약제정운동에 훨씬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학칙이 대학공동체의 전 구성원, 즉 학생-교수-교직원 사이의 민주적인 논의와 투쟁으로 제정된 규칙이라면, 자치규약은 대학의 일 구성원이며,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학생사회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자치적 운동의 방식을 통해 세워진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학생자치조직 구성원간의 자율적 토론에 기반하여야 하며 대중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자치적인 운동은 구성원 개개인 내부의 투쟁의 과정을 불러와야 하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만 한다. 이러한 자치규약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제력은 미약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구성원내부 성담론의 활성화, 구성원간 소통의 원활성등의 자치적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비민주적 학교당국과의 투쟁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학칙의 한계성과 비효율성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대학사회내에서 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의 체계이 미약하며, 이는 대중운동의 고립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이러한 대중적 소통체계의 복원의 의미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자치규약제정 자체의 과정보다는 제정까지의 담론의 활성화의 과정과 제정 이후의 자치적인 해결과정을 결합해야 하는 최대한의 인내력이 필요한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내민주와 학생사회의 자치의 의미를 지닌 학칙제정운동은 교육운동단위와 학생회단위등의 자치운동 단위들과의 실질적 연대의 과정을 통해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칙제정 운동과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순서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상호 상승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3. 방식상의 문제들.

1) 대규모 활동.

--자보와 공청회, 자료집등을 통해 끊임없이 성폭력을 쟁점화해 낸다. 이는 대중들의 소규모적 운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상의 소재와 토론의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여학운 단위내부의 활성화된 담론의 형성작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운동의 목적을 계속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주체단위는 여학운 단위이며, 여성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성폭력 해방 공간 선언 운동"등의 활동을 해나간다. 담론화작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일관된 흐름으로 세력화해 나가는작업이 필요하다.

--학칙제정운동으로서 학생회단위와의 연대를 통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원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학칙제정운동과 함께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담보하는 장기적 구성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운동진영 내부에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학-여학의 최소한의 연대형성의 전제일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기별 사안에 민감한 학생운동의 특성에 기인하여, 지속적인 운동을 저해하는 지점이 형성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질적 연대의 상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 학생회 단위에 여성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우들의 현실인식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학내성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여론화된 정도는 극히 미비하며, 이러한 은폐의 과정은 대중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번 학칙제정주변에서 보이듯, 학우들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기간의 학내성폭력 사례였다. 그간 학운, 여학운 단위가 보였던 성급한 근본적 억압기제에 대한 담론확산의 작업은 이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학우들 내부의 능동적 과정을 통해 직접 구조적 억압기제를 인식할 수 있는 전달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사례와 유형의 소개로서 학우들의 귀납적 일반화의 과정을 거칠 수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학내성폭력이 은폐되는 현실에서 학교당국에게 학칙제정이란 소수의 피해자를 위한 과도한 제정의 낭비라는 변명을 가져온다. 이때, 통계자료는 강제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학교와의 투쟁을 위해.

교수,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투쟁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쟁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대가능한 교직원 노조와의 연대에 힘써야 한다. 학칙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사회적 인식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인식전환을 규정하는 성격이 크기에 이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의 권력과 학칙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한계성을 철저히 인지하고, 학칙개정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학칙의 한계성을 인지하고, 대중운동 위주의 실천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2) 소규모적 활동방식.

== 학칙제정운동은 대학공동체내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성폭력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소규모적 운동의 방식만이 여학우와 남학우의 구체적 소통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체계는 성폭력에 대한 남녀의 경험적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이 존재할 때

에 만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기층단위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치규약이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치규약 제정운동이 장기적이고 제정 이후의 활동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층의 단위는 기존의 소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체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체의 기층단위는 학회를 기반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학회의 특성상 자유로운 소규모 토론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운동으로서, 학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이다.

대학구조조정의 시대에 성폭력 학칙제정이 가치는 의의는 무엇인가?

발제 : 31대 총학생회

1.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의 도산과 퇴출이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고 있는 시기이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의 방향이 그러하듯이 경쟁과 효율이라는 논리 속에서 이전의 가치가 붕괴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많은 대학인들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대학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의 모습, 대학의 역할, 그리고 이전까지 대학이 지니고 있었던 사회적 의미가 변해가고 있는 98년 10월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토론회 자료집,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이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성운동의 전유물로 사고되었던 성폭력 학칙제정의 문제가 갑자기 현재 대학 내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교육운동의 영역으로 사고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문제와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토론의 한 주제로 사고되고 있는지 궁금해할 지도 모르겠다. 이글은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학생사회 각 운동 세력의 운동의 방향과 그 속에서의 성폭력 학칙제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해서이다.

2.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이 가지는 특징

얼마전 영지신문을 보니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뜨거운 감자'란 제목으로 글이 실릴 만큼 98년 대학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변화가 그러하듯이 지난 몇 년간에 일어날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를 비롯하여 각 대학에서 학부제를 필두로 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학부제, 연구중심대학, 대학원 중심대학의 논의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대학에 대한 차등지원과 응용학문에 대한 집중지원현상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실제적으로 한국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간의 위계서열화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학문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주주의가 넘쳐나는 공간이었던 대학에 경쟁과 효율이라는 논리로 민주주의를 비롯한 대학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붕괴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개월간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고대에서 진행하면서 여러차례 언급되었던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의 방향성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상대평가제도의 도입등 고등학교까지 겪었던 경쟁적인 적자생존의 이데올로기를 대학에 이식하기 위한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대학인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듯 '면학분위기의 조성'을 명목으로 대학내의 진보적인 발언을 제어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대 평가제의 도입, 학시경고제의 강화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하며, 이러한 경쟁력의 강화라는 부분은 실제로 기업의 주문에 따른 인력의 생산이라는 부분으로 귀결된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의 정방향으로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은 담당하고¹⁾ 그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은 살아가는 인간을 양성해왔던 대학의 역할은 사라지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조장하는 것이 현재의 대학사회의 구조조정이다.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의 여파는 그동안 진보적인 공간이며, 사회의 여러 가지 경향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담론이 유포되었던 대학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탈각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학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개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인문학 사회과학 중심의 교양과목의 축소,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목의 편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학칙에 있어서의 개악등 95년 이후 대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에서 맞선 투쟁은 우리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투쟁을 넘어 실제로 대학사회의 성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한 판의 싸움이 바로 대학구조조정을 둘러싼 교육주체와 정권과 자본의 갈등이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의 모습이다.

3.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파장이 대학-학문간의 서열화를 강화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대학에 경쟁이데올로기를 본격적으로 이식시키고, 또한 대학내 각 주체의 발언력을 축소시키며, 그동안 사회에 대한 비판 속에서 사회의 정방향의 발전을 선도하였던 대학의 기능을 거세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투쟁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대학구조조정은 실제로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대학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시키는가?의 관점 속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가?의 문제는 2가지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대학과 학문에 대한 차등지원의 논리 속에서, 그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의 잇단 퇴출과 부도상황 속에서, 대학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대학내 제세력의 발언력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의 강화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대학 내의 민주주의를 복원한다면 대학 내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담론을 유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통한 사회발전 이데올로기의 창출이라는 것이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학구조조정의 시대의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의 의미

진보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이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통계자료, 또는 사례발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들의 입은 확확 벌어지고 만다. 그리고 우

1 이는 대학의 교육영역과 학문의 영역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다.

리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술자리 문화 등을 회상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폭력 등에 놀라곤 한다. 이렇듯 진보적이며 대학밖의 사회에 비해서 비판적인 공간이었던 대학사회조차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대학 역시 성문제 있어서 사회적인 편견이 그대로 유입되는 곳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대학밖의 사회에서보다 더욱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총적인 방향이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탈각되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진보성의 복원이라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성폭력 학칙 제정은 실제로 학내에서 성적소수자가 다양한 방식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해가고 대학내에서 역시 관찰되고 있는 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학칙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성폭력 학칙제정, 제정운동에 대한 제언

성폭력 학칙제정의 의미는 학내의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학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폭력 근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를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한다고 함은 실제로 그동안 대학본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정되어왔던 학칙을 대학내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대학 운영의 학생참여의 범위를 한 단계 높여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성폭력 학칙제정, 그리고 학칙제정 운동이 실제로 대학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대학내에서 진보적인 성담론을 유포시키기 위한 것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학칙제정의 목표는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학칙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성폭력에 대한 학칙의 제정은 실제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이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성폭력에 대한 징계의 방식이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징계위원회의 방식과는 많은 차이점을 지녀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대학본부의 인자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학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가운데서 사고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학칙의 징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원과 그 비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의 예방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단순히 학칙을 제정하는 일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칙은 성폭력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응징하는 틀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 학내외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학칙을 제정한다는 형식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내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학을 비롯한 올바른 성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학문을 공교육 체계내에 포함하는 것, 그리고 성폭력 상담센터의 건설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민주주의가 묻걸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모든 폭력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한다. 대학을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흐름인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이야기되는 시기에만 담론화될 문제가 아니다. 대학내의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학칙제정을 시작으로 대학사회 내의 올바른 성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학생사회의 각 단위, 대학의 모든 주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민주주의 물결치는 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성폭력 바람회 - 성폭력 사례들

▶ 기간 여위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들 (96년 - 98년 현재까지)

1. 96년도 이대 대동제 난동 사건

5월 29일 이대 대동제 마지막날, 오후 6시경부터 10시까지 고대생들이 응원가를 부르고 기차놀이를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한 학우가 크게 다치고 대부분의 다른 학우들이 성적 공포감 내지는 분노를 느끼는 집단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2. 과도관 화장실 사건

96년 7월 20일 과도관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학우가 용변기 위에 올라서서 옆간의 여학우를 훑쳐보는 사건이 여위에 접수되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여학생위원회는 이를 학우들에게 공개하였으며,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학생처에는 여자 화장실 상태의 보수, 성폭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에 가해자는 공개 사과문을 부착하였으며 6개월간 여성 단체에서 자원 봉사를 하였으며, 학생 처는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전했다.

3. 97년 새터에서의 성폭력 사건

새로배움터 첫날, 새내기 여학우가 잠들려고 하는 순간, 선배 남학우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물리적인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피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고대 여위는 이 사건에 대해 올바른 관점과 인식 제고를 요구하는 대자보 작업을 수행하였다.

2월 25일 p.c 통신에 충격! 고려대 o.t 에서의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해 학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통신에 올라왔다. 이후 여위에 사건이 접수되어 여위가 대자보로 사건을 공개하였다.

4. 경영대 O.T.사건

경영대 교수 및 교학과 주최로 97년 초에 열렸던 경영대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중의 사

회자의 발언과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날 저녁, 이벤트 회사에 의해서 준비한 오프닝 행사에서는 남녀 댄서의 춤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신체와 성을 눈요깃감으로 하는 선정적인 것이었다. 오프닝이 끝난 후 사회자가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사회자가 던진 질문은 "여자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이었고, 새내기들 사이에서는 "폐경기요.", "아이에게 젖먹일 때요." 등의 답이 나왔으며, 결국 사회자가 원하던 답은 "브래지어가 작을 때" 였다. 그 대답을 들은 남학생들은 크게 웃기 시작했고 여학생들은 분노하며 사회자에게 항의했지만 웃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여성을 비하시키는 사회자의 발언은 계속 되었고 이러한 사회자의 멘트와 행사 분위기에 불쾌감을 느낀 경영대 여학우들은 집단적인 항의 의 표시로 장내를 빠져나갔다.

이후 학과장과 경영대 학생회의 즉석 면담을 통해 사회자의 1차 사과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여학우들의 퇴장에 대한 유감 표명정도에만 그쳤고, 이로 인해 재차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일단락 되었다.

5. 공중전화 사건

4월 7일 접수된 사건은 저녁 7-8시경 술에 취한 여학우를 부축하던 남학우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성폭력을 가하였고, 이를 제 3자의 고대생이 발견, 여위로 신고한 사건이었다. 당시의 가해 남학우는 목격자에게 물리학과 96이라고 밝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학생이 없음을 알수 있었고, 몇차례 목격자와 함께 작업을 벌였으나 실질적인 해결을 얻지 못한 채 정리되었다.

6. 과도관 사건

지난 5월 18일 저녁, 과도관 계단을 올라가던 한 여학생이 열람실 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몇몇의 학우들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 고 이야기하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열람실 입구에서 떠들던 학우중 한 명이 뒤따라와서, 항의를 하였고 다시 여학우가 "내가 당신한테 반말이나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조용히 해달라라고 했는데, 사과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그 학우는 "여자랑 이야기 할 수 없다." 며 여학우의 의사를 무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다음날 이 여학우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도리어 여학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학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기명의 대자보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회신이 없고, 대자보 주변에는 비난성의 쪽지 - "특정 과에 대한 음해다.", "배울 만큼 배운 93이 ~" 등의 -가 붙게 되었다. 그리고 사과이후, 대자보를 자진 철회하겠다는 명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자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 여학우는 이 사건의 해결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학생위원회로 제보하게 되었다. 여위는 이 사건을

대자보로서 공개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동의하에 종결되었다.

7. 97년 과학도서관 화장실 사건

밤 10시경 이공대 3학년 여학우가 애기농 캠퍼스에 있는 이학관 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서 운동부 남학생이 숨어 있다가 엿보는 것을 발견하고는 과, 이름을 물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당시 피해자가 들은 이름이 본명인지 불분명해졌다. 사건 제보자의 해결 의지는 높았고, 이에 공개로 가해자를 찾는 대자보를 붙였으나 가해자를 찾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8. 정대후문 사건

술에 취한 남학우가 정대 후문을 지나던 한 여학우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여위에 접수되었으나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

9. 98년 세터에서의 성폭력사건

98년 세터에서 여학생위원회는 총학생회와 연대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단"을 모집하여, 세터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막고 신입생 학우들의 성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실천단이 모니터 해 온 자료들에 따르면, 촌극이나 장기 자랑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물상화하는 발언과 행동들이 발생하였다.

10. 98년 신입생 응원 O.T.사건

신입생 응원 O.T. 도중 여성을 비하하고 물상화하는 언어적 성폭력이 발생하였다. 매년 응원 오티과정에서는 여학우들을 그 대상으로 한 언어적 성폭력이 발생해 왔다. 그간 여위가 이러한 대대적인 성폭력 문제를 외면했던 사실은 실로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응원 오티는 마치 모든 신입생이 남성인 듯 남학우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응원단장의 소개에서부터 응원 동작의 소개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성적 능력을 강조하고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언행들을 발설해 왔던 것이다.

1. 단장의 소개: 배와 하체를 앞으로 내밀면서 막강한이라는 단어를 병행하며 남성적 힘이 강력한 응원단장이라는 소개를 했다.

2. 부단장의 소개: 시골 촌놈이라 힘이 좋다.

3. 엘리제응원 모션을 가르치며: 두 팔을 가슴에서 흔드는 동작에서 여성들은 근육이 발달되어

서 아플 것이다.

4. 젊은 그대: 허리를 움직이는 모션을 연습하며 허리 힘이 강해진다고 말함. 이와 함께 이 동작을 잘 해야 연대로 시집가려는 연대생이 이 동작을 보고 고대생에게 시집온다라고 말함.

5. 서울의 모정: 치마 속이 보이지 않도록 치마를 내리는 동작으로 모션을 가르치다.

이 응원 오리엔테이션의 진행을 본 여학우들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에 휩싸여 즉각적인 반응은 하지 못했지만 서관 2층의 여자 화장실에 보면 "응원단 해체하라!"는 식의 간접적인 성폭력에 대한 반응을 표현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엘리제의 모션중에 여자의 브래지어 사이즈 A,B,C를 얘기하면서 이 모션에서 여학우들에게 불편한 점을 설명하다.

한 가지 더 접수 들어온 것은 Y.T 과정에서 왜 여성은 이유 없이 짧은치마와 빨간 립스틱을 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공중전화 사건

11. 음란 전화 사건

모과에서 한 남학우가 같은 과의 많은 여학우들에게 음란 전화를 걸어 성적 불쾌감을 갖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12. 대도관 앞 사건

12시 30분경 집으로 돌아가던 4명의 여학우들이 정체 불명의 남학우 2인에 의해 '고대녀들은 창녀다'라는 등의 언어적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3. 98년 이대 대동제에서의 사건.

98년 이화 광장 주변에는 예전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난동을 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고대생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이대는 지킴이와 영상이들의 활동으로 계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감시 작업들을 진행했다. 율동이들은 이화 광장 중앙에서 문선을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자리를 점거함으로써 고대생들에게 난동의 빌미를 내주지 않았다. 이러한 고대와 이대의 일련의 근절 노력으로 인해 다행히 근절이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대동제 2째 날 이화 광장 주변에서 FM을 하던 고대생 집단과 마지막날 대자보 앞에서 'I will be back'을 외치고 정문앞에서 엘리제를 든 30여명의 고대생 집단의 행동으로 용두사미의 모양새가 되었다. 문제는 대자보 앞에서 외쳤던 의도성 짙은 발언과 이에 연속된 응원가로, 그 장소가 이대축제의 공간인 이대 공간내부는 아니라 할 지라고 이러한 공간의 연속

선적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명한 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이대는 현실적 한계성을 인정하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처의 개별적 혼계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대한 고대 양 단위의 입장은 이는 학생처의 혼계라는 단발적 대응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정리 대자보 사업을 통해 공론화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이대는 문제제기 없이 혼계의 조치를 학생처에 대한 보고의 수준으로 정리했다.

14. 고연제 기간중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

98고연제 기간중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여위에 현재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15. 총학생회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16.

****기타 다른 사건들은 피해자가 완전 비공개 하기론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타대의 사례<<<

1.성균관대 화장실 성폭력 사건

93년 명륜동 캠퍼스에서 학생 회관 여자 화장실을 남학생이 훑쳐보는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이 밝혀져 학생 회관 화장실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96년 수원 용전 캠퍼스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2.성대 언어 성폭력 사건

95년 00과에서 한 남학우가 같은 과 여학우가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무근의 소문을 퍼뜨렸다. 여러 명의 여학우를 대상으로 이러한 식의 언어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런 소문들이 그 여학우의 귀에 들어가 사건이 문제시되었다. 이 사건은 과내에서 대책위가 꾸려졌으나 별다른 해결을 하지 못했다.

3. 성대 도서관 성폭력 사건

96년 8월 도서관에서 95학번 남학생이 '너만 봐'라는 외설 연극을 보고 청티이프와 칼을 들고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 갔다. 타학교 학생이 언니를 따라 도서관에 왔다가 어떤 남학생이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자 놀라 도망갔고 강간하려던 남학생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에 총여학생회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해 가해자가 공식적인 실명대자보를 쓰고 자퇴, 피해배상금 지급, 성폭력 상담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등의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4. 성대 97년 새터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화

97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장기지랑 시간에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서 성기모양을 만들고 여학생이 가운데 앉아 암바사를 뚫으며 사정하는 것을 흥내내었다. 그 상황에 있던 울전의 한 학우가 불쾌하다는 표시를 하였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미있으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는 거냐며 여학생들의 반발을 무시했다.

또 모 단대에서는 실무단 여학생이 공지 사항을 전하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여/자/다'를 환호하며 '웃/벗/어'리고 집단적으로 말했다.

5. 성대 자취방 강간 사건 및 성폭력 사건

97년 3월 명륜동의 한 자취방에서 여학생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남학생이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이 사실은 총여학생회에 알려지게 되어 학단위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가 여러번 해결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가해자의 진술 반복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이 사건은 가해자가 명예회손으로 학생회를 고소하고 피해자는 강간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정 싸움으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97년 00과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여후배를 성추행하는 사건과 00과에서 MT 도중 자는 틈을 타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군대를 가고, 절로 들어가 사건의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

6. 94년 6월 K대 미술공학과 교수 성추행 사건으로 학생들이 항의, 농성

7. 94년 6월 H대 J교수에 의해 성폭행, 학생들의 항의 및 선전 작업으로 가해자가 교수직의 사퇴로 마무리.

8. 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폭력 사건

92년 6.5.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애편 기기조작을 위하여 20~30차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원고의 의자 옆 또는 등 뒤에서 피고의 가슴을 원고의 등에 가까이 대고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한 채로 원고의 앞에 있는 컴퓨터의 키보드를 자신이 치기도 하고 원고의 어깨나 등에 피고의 손을 올려놓거나 원고의 등을 쓰다듬기도 하고, 원고가 기기를 작동하고 있을 때 옆에 앉다가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팔을 손으로 잡기도 하고 때로는 원고의 옆에서 위 기기를 조작하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의 몸의 일부분을 접촉시키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던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 피고 신정휴 교수가 패소한 채 마무리되었다.

9. 96년 S대 강사가 여학생 몇몇을 성폭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사건은 강사가 사퇴를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10. 96년 S대 교수가 한 여학생에게 워드 부탁을 하고, 일을 끝낸 후 고맙다며 저녁을 사주고 술을 마심. 술을 2차까지 요구했으며 교수가 자기의 집에 가자고 함. 계속해서 이상한 교수의 태도에 당황한 여학생이 울면서 도망감. 친구들이 알고 총여학생회에 알렸으나 피해자가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 사건 종결됨.

10. 96년 여동 동국대 노가리 사건

중강 무렵, 학교앞 술집에서 00과 강사와 복학생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의 두명의 여성에게 합석을 하자고 요구, 이를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재떨이, 젓가락 심지어는 노가리를 던지며 행패를 부림. 서로 따귀를 때리는 몸싸움 끝에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보았으나 여자 측에 불리한 결론이 남. 여자 측에서는 총여로 연락해 오고 강경대응을 하고자 했으나 동대생도 아닌데 대응 해 봤자 뭐 하겠냐며 연락을 끊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됨.

11. 96년 11월 부산대 체육학과 산행 성폭력 사건

체육 학과에서 실시한 산악 훈련 중 마지막 날 교수에 의한 성추행과 신입교수와 조교에 의한 구타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각종 언론이 '대학교수 성 추행 물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후에 학교측과 학생측과의 비상대책위를 통해 진상 규명과 관계자 징계 등에 합의하여 마무리 지음.

12. 국민대 교수 성폭력 사건

96년 12월 송교수가 한 학생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 평창동에서 먹은 후 집에

데려다 다고 함. 집이 왕십리 인데도 피주로 차를 몰아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서울로 나가는 길목에서 여러 번 차를 돌리다가 어느 여관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자고 제안함. '나를 존경하면 같이 가자'며 할 얘기가 있다고 유인함. 여관에서 술을 시켜 놓고 학업 얘기를 하다가 애인이 있느냐, 성관계의 경험이 있느냐고 물으며 음란 비디오를 틀고 거부하는 여학우를 강간함.

13.97년4월 서울대 구교수 성폭력 사건

14.서울대 전진욱 교수 버스 사건

97년 1.29. 경주발 심야 우등 버스에서 동덕 여대 모양은 서울대 96학번 전진욱에게 두 번에 걸친 성추행을 당함. 전군은 자리를 옮겨 한 번의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것을 이용하여 몸을 더듬음. 모양은 사과와 도망가려는 전군의 신분증을 뺏고 관악 여성 모임에 신고를 하여 동대 여위와 공동 대응을 한 결과, 공개 사과문과 여성학 세미나 등의 참여1회로 해결을 지음.

15.이대 학생 레게바 성폭력 사건

16.춘천 담갈비 사건

97년 3월 성대 정문앞 원조 춘천갈 담갈비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학생이 주인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함.성대 총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아직까지에 이르고 있다.

17.96년 연대 한총련 진압 과정에서의 성폭력

연행 과정에서 가슴을 주무르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면 곤봉과 방패로 내리찍고 군화 발로 내리찍음.'너희들 사수대 애들한테 맨날 몸대주지 안'아. 이 씨발년 들어! 니네 위안부 노릇 하려고 왔나?', 둘 한 번 던진 애들한테 한 번씩 빨아 줬나?.'니네 여학생들 가슴을 보니까 노릇 하려고 왔나?.' 둘 한 번 던진 애들한테 한 번씩 빨아 줬나?.'니네 여학생들 가슴을 보니까 니네들이 벌써 다 할거 아니냐. 가슴이 다 처졌더라. 어떤 애들은 가슴을 만져 보니까 처너 갈지가 않아.'.'니네 믿고 있는 여학생들이 불쌍하다. 지금 우리한테 당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싸워라.' 등의 발언과 몸매 얘기 가슴 얘기를 수도 없이 함.

18.이대 온라인 성폭력 사건

통신 중 이대라고 밝히자, '어제 너 여관방에서 잤던 그애 아니냐', '이대 애들은 같이 자 보니까 다 그렇더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항의하는데도 쪽지를 보냄. 여성 민우회와 연대하여 아

이들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음.8

19.서울대 성폭력 학생 퇴출

98년 5월 신촌의 모 호프에서 만나 취기를 빌미로 과도한 신체접촉을 함. 실명 대자보로는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인문대 학생회와 인문대 교수2회의의 판단에 따라 퇴출시키고 피해 여학생의 재학 기간인 2002년까지는 재입학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가해자도 받아들여 마무리됨.

*아래 사건들은 여성 연대 회의에서 성폭력 박물관-사례 백서에서 나온 글들입니다. 어디 학교인지, 또 구체적 실명을 사용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96년 0동아리 00은 봄 정기 MT를 감. 보통 그렇듯이 방은 하나 빌렸으며, 밤이 되어 술을 많이 마시게 됨. 93학번 여학우가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곤해서 방에 먼저 가서 잠을 자게 됨. 자고 일어나니 바지 지퍼가 내려와 있어서, 수상하게 옆을 쳐다보니 같은 동아리 96학번 여학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드러누워 있었음. 96학번 후배를 다그쳤더니 같은 동아리 91학번 선배가 자고 있는 93학번 선배를 강간하고 여자 후배는 자신도 당할까 봐 아무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지는 척을 했다고 함. 이 사건은 동아리내 공론화시켜 동아리 총회를 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총회 결과 동아리에서 제명 당하게 됨.

21.MT에서 술에 취한 여자 후배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성폭력 함. 몇 후배가 책임을 추궁하자 서로가 원했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함.

22.96년 사회대에서 00과의 신입생 환영회 중, 95학번 선배가 찍어 둔 후배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임. 이 선배는 그 여자 후배가 전화를 걸러 가자 쫓아가서 전화박스 앞에서 기다림. 그리고 나오는 후배를 다짜고짜 붙잡고 키스를 함. 이 후배는 어쩔 줄 몰라서 그 선배를 계속 피해 다님.

23.군에 입대하는 학우를 위한 환송회에서 매춘하러 가자는 분위기를 조장하며 가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자 선배가 막아 문제화 함. 후배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논의함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문화는 담론화되는 것을 꺼려왔으며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요하고 착한 여자, 현모양처 콤플렉스를 느끼게 하였다. 점차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또 성문화에 대해서 많이 담론화되고 있다. 그러나 성의 담론화, 개방화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성의 개방은 성의 상품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여성에게는 섹시해야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안겨주었다.

대학도 이런 성문화를 가진 사회내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식의 상아탑이라 자부하며 뭔가 특별해보이려하지만 대학내의 성문화도 왜곡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성폭력, 학제과 교수사이의 성폭력, 집단적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의한 성폭력등 여러 유형의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각 학교의 여학운의 단위는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여학생 연대회의를 진행시키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가안을 만들었다. 각 학교마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지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학이라는 기본적으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인식 수준이라든지 성폭력의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 점도 많다. 이에 안암의 다른 학교에서의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97년 대동제기간에 발생했던 화장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3대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전문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학교측과의 면담을 통해 건의가 받아들여졌고 그 후 성폭력 상담실이 마련되었다. 현재 이름을 여학생 상담실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식이 아직 낮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상담실이라는 명칭이 주는 사회적인 편견때문이다. 여학생 상담실에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 책임 상담원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와서 상담을 해주면서 책임을 맡고 있다. 또 학생 생활 연구소에 성폭력 상담 상근 조교가 배치되어있는데 이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마저 제한이 있으므로

상시적인 상담과 신고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학생 상담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근 조교도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보다는 학생생활연구소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에는 지난해 대동제와 모교지에서 발생된 성폭력으로 인하여 학생회 단위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학교측에 요구하였고 마련되었다. 그러나 상담소만으로는 처벌이나 예방에 있어 한계가 있기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학칙 제정까지는 안되었지만 현재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 중이다. 위원회는 지난 8월에 교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고 서울 시립대학교 산하에 있다. 학칙이 아닌 성폭력 위원회라는 것은 학교측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었다. 성폭력 위원회의 규정안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고 나아가 예방까지 하려 하고 있다.

2.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98년 4월 20일 '성폭력 학칙 제정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인문대 여학생회, 정정현 편집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학내의 각 운동 단위중 몇몇 단위에서 1인 이상이 참여해 '성폭력 학칙 제정위원회'를 건설하였다. 이 위원회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과 왜곡된 성문화 바로잡기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학내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모인 각 학교 여학운 대표자들의 연대회의에서 만든 학칙 가안을 수정하여 성대의 학칙 가안을 만들었고 이를 가지고 학교측과 만났다. 현재 그 수정안을 학교측에서 받아안아 고민하고 있다. 학칙 대신 97년 발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현실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어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 학칙의 수정안이 학교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사실 많은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총여학생회는 만약 학칙이 불가능한 경우, 각 단대 내에서 자치규약을 제정하는 방향과 성폭력 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3.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는 96년도에 결성된 관악 여성모임 연대를 중심으로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왔고 학내 성인식의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왔었다. 그러나 관악 여성모임 연대는 이제껏 성폭력 사건이라는 사안 중심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었고 이런 사안 중심적인 대응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악 여성모임 연대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성폭력 학칙 제정

을 준비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가서 관악 여성모임 연대가 학내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는 적다는 것으로 인해 학칙제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대표체가 학칙제정에 동참할 수 있다면 더더욱 힘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여 41대 총학생회와 사회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가 같이 하는 공대위가 꾸려져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교수의 사건이 아직 소송 중이었고 신교수는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2년 6개월동안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었던 신교수 사건의 3심 판결이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에 신교수는 여전히 시효를 운운하며 징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공대위는 신교수의 퇴진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신교수 퇴진을 위한 노력으로 자보사업으로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투쟁선포식과 작은 집회 등을 전개하였다. 공대위는 신교수 퇴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을 동시에 해나갔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으로 5월 초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칙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학생생활연구소 내의 여학생부와 공대위의 대화를 통하여 학칙의 가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관악 여성모임 연대 내의 각 단대의 자치단위들은 단대 학생회와 함께 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회칙의 제정하였다.

4. 부산대학교의 경우

부산대학교는 지난 9월 8일 대학내 최초로 학내의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성폭력 규제 규정'을 교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제정되었다. 97년 9대 총여학생회의 학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학칙 제정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95%의 학우들이 학칙 제정을 찬성 하였고 학내에서 교양강사가 여학우를 성희롱한 사건을 비롯해 교내 성폭력 문제가 계속 제기 되어옴에 따라 10대 총여학생회가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 성폭력 규제 규정이 마련되었다.

5. 동아대학교의 경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 학교의 여학우 단위가 모인 연대회의 학칙과는 또다른 논의로 이미 동아대에서는 성폭력 관련 학칙이 제정되어 있었다. 올해초 학내에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학내의 성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여학생회는 학교측에 건의를 하였고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여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학칙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